

법무규정

제정 2020. 4.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에 필요한 원칙,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자문”이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리스크 해소에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송”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가. 민사소송사건(신청사건을 포함한다)
 - 나. 형사소송사건(공사가 당사자인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 다. 행정소송사건 (심판사건을 포함한다)
 - 라. 비송사건 (비송사건절차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비송사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무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법률고문의 위촉·운용) ①공사는 업무 전반에 필요한 법률자문, 소송위임 등을 위해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의 위촉,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법률자문) ①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이 필요한 부서는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송의 수행) ①영업부서장 또는 소관부서장(이하 ‘소송수행부서장’이라 한다)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의 제기, 응소, 화해, 취하 등 소송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의 주체, 방법, 소가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소송수행부서장은 소가,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또는 공사의 직원(사내변호사 포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절차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송관리) ①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 수행과 관련한 불변기간, 각종 기일, 보정명령 등을 확인하여 공사가 소송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때에는 소송결과를 준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관리의 방법과 절차, 소송 종결시 조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의 수행) ①소송수행부서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하자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준법지원실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의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하자진단 전문업체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부서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이 아닌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업무 및 보수, 계약체결, 하자진단 전문업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이사회규정 [별표]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

구 분	규 정 명
준법통제	법무규정

②사규관리규정 [별표1]사규분류표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

분류	사규번호	사 규 명	공개 여부	제 개정 사전예고 여부	소관부서
제16편 준법통제	16-4	법무규정	공개	예고	준법지원실